

수탁회사 보고사항 관련 공시

2008.9.29.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
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31 조 제 4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10 조 2 항에 의거하여 당사는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1. 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

해당사항 없음

2. 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의 법령 또는 신탁약관 등에 위반 사항

펀드명: 프랭클린템플턴인컴혼합투자신탁 1 호

운용회사: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

수탁회사: 국민은행

공시일: 2008 년 9 월 29 일

공시내용: 프랭클린템플턴인컴혼합투자신탁 1 호에서 운용지시로 인한 위반이 아닌 펀드순자산 감소로 인하여 법령 및 약관상 동일종목 10% 투자한도 초과가 채권투자에서 발생하였고, 수탁회사에서 통지(2008.9.17)한 이후에도 동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못하였습니다. 당사는 초과분 해소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였으나 글로벌 신용경색 여파로 인한 채권시장의 유동성 감소로 해당채권의 매각이 지연되었습니다.

그러나, 2008. 9.29 일에 해당 채권매각을 통하여 초과분을 모두 해소하였습니다.